

 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2019년 10월 1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 과장 문태섭(054-429-4191), 사무관 이용관(4199)/ 제공일: 10월 11일(총 7매)		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관원,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

- 10월 14일부터 전국 4,1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「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」 및 「농업경영체 증명서」 발급 창구를 전국 4,1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로 확대

- 그동안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을 농관원 지원·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았으나, 10월 14일부터 전국 읍·면·동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농업인 불편 해소

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노수현, 이하 '농관원')은 10월 14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농업인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.

○ 그동안 「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」나 「농업경영체 증명서」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(www.agrix.go.kr)에 접속하여 발급받거나, 콜센터(1644-8778) 또는 농관원 지원·사무소에 전화하여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.

○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.

□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행정안전부,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,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되었다.

○ 「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」와 「농업경영체 증명서」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, 농업·농촌관련 융자·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.

- 「농업경영체 증명서」는 인적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, 「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」는 인적정보, 농지면적, 재배품목 등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발급 수요가 훨씬 많다.

*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함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

* 발급 현황('19.8.): 농업경영체 증명서 37천건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,662천건

○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, 지하철역 및 농협 등에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.

□ 농관원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에 따라 170만 농업경영체가 보다 편리하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길 기대하며,

○ 앞으로도 “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정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,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참고 1

「무인민원발급서비스」 주요 이용화면

① 무인민원발급기 메인화면	② 농업경영체 발급서식 선택
③ 등록조건(개인/법인) 선택	④ 주민등록번호 입력
⑤ 지문인식	⑥ 내역확인 후 발급

참고 2

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관련 용어 설명 및 현황

□ 농업경영정보의 등록

-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여, 농업·농촌에 관련된 용자·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

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4조

< 농업경영정보 >

- 농업인 정보(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영농이력 등), 농지 정보(소재지, 면적, 재배품목, 경영형태 등), 직불금 또는 보조금 신청 정보,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 정보, 농산물 유통·가공 정보 등 56개 항목

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
-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하며, 인적정보와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음

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

<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현황 >

- ('17) 573천건 → ('18) 1,568천건 → ('19.8) 1,662천건

□ 농업경영체 증명서

-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, 인적정보만 확인할 수 있음

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항

<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현황 >

- ('17) 51,696건 → ('18) 51,389건 → ('19.8) 37,158천건

참고 3

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서식

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2호의3서식]

(2쪽 중 제1쪽)

농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 확인서																
1. 등록번호		최초등록일자			최종변경일자											
2. 경영주 (법인명 및 대표자)		경영주 성명 (법인명 및 대표자)			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[]경영주(법인 및 대표자) 변경이력 표시								
3.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(조합원 또는 등기이사)		공동경영주 여부 []														
		[]경영주외 농업인 변경이력 표시														
4. 주소(법인 주소)																
5. 농지 및 농작물 재배(삭제필지 []표시, []미표시)																
변 호	농지 소재지		지목		경영 형태	농지면적(㎡)				미이용 휴경 폐경						
			공부	실제		공부	실제	경작								
품목별 재배면적(㎡)										등록일자						
재배품목 (예절품목 포함)		노지	시설						삭제일자							
			온실 (유리)	온실 (경질판)	온실 (비닐)	육묘장 (유리)	육묘장 (경질판)	육묘장 (비닐)						재배사		
6. 임야 및 임업경영 (삭제필지 []표시, []미표시)																
변 호	소재지		경영방식		경영형태	임야면적(㎡)				미이용 휴경 폐경						
			임목생산	임산물 재배		공부	실제	경영								
재배면적										산림경영계획					등록일자	
품목		면적		인가번호	경영계획구 명칭	계획기간	경영계획구 면적	삭제일자								
		노지	시설													
7. 가축·곤충 등 사육 시설 및 규모 ([]등록된 시설만 표시, []삭제내역 포함 표시, []전체 미표시)																
사육 시설																
변 호	사육시설 소재지		소재지 공부면적 (㎡)		시설 면적(㎡)		자영· 임차	용도	사육품목	사육 규모 (마릿수/군/㎡)	등록 일자	삭제 일자				
					공부	실제										
8. 직불금 및 정부보조, 인증현황 ([]표시, []미표시)																
연 도	직불금(천원)						정부보조·융자금				친환경 등 인증 정보					
	농업소득 보조금	농업소득 보조금	농업소득 보조금	농업소득 보조금	농업소득 보조금	농업소득 보조금	농업소득 보조금	농업소득 보조금	농업소득 보조금	농업소득 보조금	농업소득 보조금	농업소득 보조금	농업소득 보조금			

(2쪽 중 제2쪽)

9. 농업(임업)경영 관련 교육 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현황 ([]표시, []미표시)									
성명	교육 이수 정보			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					
	교육기관	교육과정명	교육기간	종류	품목	선정 연도			
10. 농업(임업)용 면세유류 배정량 ([]표시, []미표시)									
성명	유종별 배정량(ℓ)								
	합계	휘발유	경유	등유	윤활유	중유	가스	부생연료유호	
위 경영체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가 등록(변경등록)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직인 ※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지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, 등록된 정보는 관할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(0000-0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000.000.00)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 ※ 본 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(농업법인)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. ※ 공동경영주 여부는 '경영주외 농업인'인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 ※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'농지 및 농작물 정보'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'임야 및 임업경영 정보'는 산림청장 담당으로 등록 정보에 관한 문의는 경영주 농업인 주소지(법인은 사무소 소재지) 관할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■ 문의처: 농지 및 농업경영 관련 경영체 등록정보(주소지 관할 농관원), 임야 및 임업경영정보(산림청)									

210mm × 297mm[백상지 80g/㎡]

농업경영체 증명서				
1. 농업경영체 등록번호	최초등록일자 최종수정일자			
2. 경영주 (대표자 및 법인명)	경영주 (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3. 경영주 외 농업인 (조합원 또는 등기이사)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공동경영주 여부[]	
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공동경영주 여부[]	
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공동경영주 여부[]	
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공동경영주 여부[]	
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공동경영주 여부[]	
4. 주소 (법인 주소)				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직인 ※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지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, 등록된 정보는 관할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(0000-0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000.00.00)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 ※ 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(농업법인)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. ※ 공동경영주 여부는 '경영주 외 농업인'인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 ■ 문의처: ☎ 000)0000-0000				